

의 안 발 의 서

의 안 번 호	2010 - 23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10. 04. 06.

제 목 : 조례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거창군의회 신 주 범 의원 (인)

거창군의회 조 선 제 의원 (인)

의안번호	제 2010 - 23호
의결연월일	2010. 04. 15. (제 166 회)

의결사항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신주범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10. 04. 06.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10-23호
----------	-----------

발의연월일 2010년 4월 06일

발의자 신주범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가 사용할 기저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나. 조례의 지원대상(안 제3조).
- 다. 조례의 지원기준(안 제4조).
- 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방법(안 제5조).
- 마. 지원의 중단 사유(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 「장애인 복지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연간 60백만원(예산 확보후 실시)
- 다. 합의: 보건소 합의
- 라. 기타: 해당없음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환자”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서 치매나 중풍(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거동 불편자로 확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기저귀”란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기저귀는 1주 3팩(10개/1팩)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되,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기저귀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노인성 질환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노인성 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저귀 지급을 중단한다.

1. 노인성 질환자가 사망했을 때
2. 노인성 질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3. 노인성 질환자가 관할구역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예산 확보 시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